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698 발의연월일: 2025. 4. 10.

발 의 자:안상훈·최보윤·이인선

조정훈 · 안철수 · 주호영

이성권 · 임이자 · 백종헌

박상웅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, 요양병원, 종합병원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함.

하지만,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의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·시설 등의 장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, 노인학대의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, 요양병원 등에 한정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를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실시 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노인 관련 보건·복지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시설의 장에게도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 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9조의6제5항). 법률 제 호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의6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다음 각 호의 기관의"를 "기관· 시설 등의"로, "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"를 "실시하도 록 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9조의6(노인학대 신고의무와	제39조의6(노인학대 신고의무와		
절차 등) ① ~ ④ (생 략)	절차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		
	승)		
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	⑤		
고의무자가 소속된 <u>다음 각 호</u>	<u>기관·시설</u>		
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	<u>등의</u>		
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			
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<u>실</u>	<u>실</u>		
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	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계		
<u>장관에게</u> 제출하여야 한다.	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		
1.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	<u><삭 제></u>		
2.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	<u><삭 제></u>		
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			
원 및 종합병원			
3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	<u><삭 제></u>		
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			
⑥ (생략)	⑥ (현행과 같음)		